

Zoom-in Trade



- ▶ COVER STORY:
중소기업의 AEO 및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1
- ▶ FTA NEWS:
이제는 '한-터키 FTA'를
바라본다!2
- ▶ VOICES FROM THE FIELDS:
제 5 차 개정 HS 제도
주요내용3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4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5
- ▶ WHERE IS GRACE CHANG?:
7
- ▶ ABOUT WRITERS 7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중소기업의 AEO 및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AEO 인증과 FTA 를 활용한 관세혜택의 수혜는 급변하는 지금의 무역시장에서 가장 큰 Trend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을 영위하는 기업, 운송업체, 창고업 및 관세사를 비롯하여 무역전반에 있어 AEO 인증을 통하여 물류 흐름의 개선 및 물류 보안의 강화를 할 수 있으며, 또한 FTA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을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AEO 및 FTA 를 활용 하는 것이 무역업에 있어 명백히 유리함을 알면서도 쉽게 접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1-1.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 개요

AEO 은 세관 당국이 수출입업체 등 수출입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와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공인하는 제도로써 인증획득시 수출입물품 검사제외, 심사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2. AEO 공인의 필요성

- 수출입물류비용 절감

AEO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 통관절차에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물품 인도의 신속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거래선의 유지와 확보

최근 해외 거래 업체가 우리 기업에게 AEO 공인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新 무역환경에서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거래선의 유지와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 수출경쟁력 제고

AEO 업체는 국제사회가 인정하기 때문에 AEO 를 통해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1-3.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애로사항)

현재 우리나라 AEO 공인 업체 수는 181 개로 이 중 대다수의 인증기업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기업 편중 현상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AEO 제도에 대한 전문성 결여, 인력·자금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AEO 공인 획득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2-1. FTA 협정 개요

FTA 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상대국, 혹은 상대 경제단체 간의 관세인하 협정으로서, 상대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2-2 FTA 의 필요성

-수출업체

자사 생산, 혹은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상대국 수입자의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수출증대의 간접 효과를 향유 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

수입 시 상대 수출자에 원산지 증명서를 징구하여 수입통관단계에서 적용 시, FTA 협정세율에 따라 관세인하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통관 단계에서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가능 합니다.

2-3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애로사항)

2006 년, 최초 한-아세안 FTA 가 발효되어 지금까지 적용 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별 상이한 협정내용, 복잡한 준비서류, 법규 및 절차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3~40%에 불과 합니다

AEO 및 FTA 의 활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수준의 비용을 지원하고 검증된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AEO 인증 및 FTA 활용 부분에 있어 정부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한관세법인은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가지고자 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 영 훈

kimyh@customsservice.co.kr

이제는 '한-터키 FTA'를 바라본다!

정부는 2012년 2월 터키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터키 FTA의 적극적 추진을 발표하였다. 올 상반기 조속한 타결이 예상되는 한-터키 FTA는 현재까지 3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이하 그 내용을 바라보고자 한다.

□ 한-터키 FTA의 추진배경

터키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후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유럽 發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2010년 OECD 경제성장률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2011년에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2위 중국)하였다. 이렇듯 터키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외환·금융시장이 불안한 대표적 신흥국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고성장 기반의 마련으로 국제신임도가 향상되었다.

터키는 유럽,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새이며 에너지 연결망, 중동시장의 관문 및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특히 현재 발효된 한-EU FTA에 더불어 한-터키 FTA가 발효된다면 유럽에 대한 우리기업의 FTA 수출입 시장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 수출입 동향

한국은 터키와 1957년 수교하였으며, 교역 규모는 1977년 20만 달러에서 2011년 5.9억 달러(수출 5.08억, 수입 0.8억 달러)로 약 250배 증가하였다. 교역규모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감하였으나 '09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심화는 FTA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소의 발판을 마련 할 것으로 기대된다.

對터키 수출의 경우,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11년 주요 수출대상에는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 제품, 철강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



FTA를 통하여 자동차생산업체의 터키 진출 확대로 신차용 OEM 부품과 A/S 용 부품에 대한 우리 제품의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1977~2011년 간 對터키 수입은 석유제품, 자동차부품이 전체 수입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65배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FTA를 통해 양국간 무역수지의 균형에 다가가는 증가를 기대해본다.

□ 한-EU FTA의 활용한 터키로의 수출

터키와 EU는 1996년부터 관세동맹¹이 발효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이 EU를 통해 터키로 우회수출을 하는 경우 현재 간접적인 FTA 효과[한국 수출 → EU (관세절감 또는 철폐) / EU → 터키 (관세 무세)]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 EU 등의 주요 시장에 비하여 한-터키 FTA가 우리나라 수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도 설명한다. 그러나 지정학적 요충지인 터키로의 진출은 EU 시장 외에도 향후 자동차 구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국으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높인다.

<한-터키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77 | '87 | '97 | '07 | '08 | '09 | '10 | '11 |
|------|-----|-----|-------|-------|-------|-------|-------|-------|
| 수출 | 20 | 72 | 1,122 | 4,087 | 3,773 | 2,661 | 3,753 | 5,085 |
| 수입 | 12 | 8 | 66 | 282 | 362 | 434 | 516 | 804 |
| 무역수지 | 8 | 64 | 1,056 | 3,805 | 3,412 | 2,227 | 3,237 | 4,281 |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설명회! (AEO 인증 및 FTA 활용분야)

신한관세법인은 오는 2월 16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설명회(AEO 인증 및 FTA 활용분야)를 개최합니다. AEO 인증을 통한 물류흐름 개선,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절감 및 가격 경쟁력 확보 이들이 현재 무역시장의 가장 큰 TREND 일 것입니다. 이에 신한관세법인 신성훈 관세사, 최대규 관세사와 함께, 관세청 정기섭 사무관, 중소기업 진흥공단 전홍기 센터장의 설명으로 정부지원 컨설팅 사업의 소개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AEO 및 FTA의 활용이 분명히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및 절차 등의 이유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주최** 신한관세법인
- 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상**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
- 신청** 이메일 접수 : shpark@customsservice.co.kr
신한관세법인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참조
- 일시** 2012년 2월 16일 오후 3시 ~ 5시
- 장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6-4 번지 지하 1층 신한아트홀 (SK 주유소 뒷편)
- 문의** 신성훈 관세사
전화 : (대표)02-3448-1181, (직)070-4343-7730
E-mail: shshin@customsservice.co.kr

| 시간 | 내용 | 발표자 |
|-------------|------------------------------------|---------------------|
| 15:00~15:05 | greeting |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대표이사 |
| 15:05~15:45 | AEO 제도 및 중소기업 AEO 인증 지원사업 설명 | 관세청 정기섭 사무관 |
| 15:45~16:00 | AEO 인증준비과정 소개 | 신성훈 관세사 |
| 16:00~16:10 | brake time | - |
| 16:10~16:30 | FTA 활용 설명 | 최대규 관세사 |
| 16:30~17:00 | FTA 관련 정부지원사업 설명 및 Q&A | 중소기업진흥공단 전홍기 센터장 |

※ 자세한 내용은 신한관세법인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ustomsservice.co.kr/>)

□ 향후 추이

현재까지 한-터키 FTA 협정문상 양허대상 품목 및 관세철폐스케줄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경제효과 분석을 통하여 양국은 최대한 이익을 반영하는 FTA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터키 제품의 관세를 낮추더라도 크게 민감한 품목이 없어 무난한 타결이 예상된다는 통상교섭본부 관계자의 말에 더불어 미국, EU 등의 주요국과 FTA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터키와 같은 신흥국과의 FTA를 추진한다면 전략적으로 FTA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지아

jachoi@customsservice.co.kr

¹ 관세동맹(Customs Union)이란, 역내 무역 자유화와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 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간 경제통합형태임. 국가간 경제통합단계는 "자유무역협정(FTA) → 관세동맹(Customs Union) → 공동시장(Common Market) →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 단일시장(Single Market)"으로 점차 발전함.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 특집! 기획 연재 시리즈] @

제 5 차 개정 HS 제도 주요내용

국제무역과 상품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는 매 4-6년마다 HS 제도에 대한 전면 개정을 실시하고 있다. 2009. 6월 WCO 이사회 제 113/114차 회의에서 제 5차 HS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2012년부터 정식으로 2012년판 HS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2012년판 HS 제도는 2007년판에서 총 53개류에 걸쳐 225조가 개정되어 6단위 호의 수가 5,052개에서 5,205개로 늘어나는 등 비교적 폭넓게 이루어졌다. 금년 1월부터 중국해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2년판 개정 HS 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FAO의 통계 수요를 반영한 농림수축산품 분류체계 세분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요구에 따라 HS 제도가 국가 및 지역의 식량안전 분석과 조기경보에 활용되고, FAO의 통계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 1류~제 16류의 농림수축산품에 대한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 류의 주와, 소호의 주 및 호와 소호를 개정하였다.

- ①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무역량이 많은 농수산물에 대한 분류체계 세분화
예) 노르웨이 바다가재, 냉수성 새우류 및 주요 민물어종(메기, 잉어, 뱀장어, 가물치 등)
② 국민총생산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가에도 중요한 경제적 의미가 있는 가공류 상품에 대한 소호 증가

예) 오리, 거위, 칠면조 등

- ③ 파종용 종자에 대한 품목 증가

* 종자는 지재권보호 대상이며 생산액이 많아 파종용과 식용종자의 구분이 필요

예) 제 10류, 제 12류 종자에 대한 소호 증가

- ④ 기름, 지방 및 식품 안전에 관련된 물품의 소호 증가

예) 1501호에 돈지를 별도로 구분, 1502호에 소 또는 양의 지방을 구분

- ⑤ 일부지역의 식량 안전과 관련된 상품의 소호 증가

예) 조개, 새조개 및 피조개

- ⑥ 실제 무역상황에 근거하여 새로운 상품종류와 잠재적 중요성을 갖춘 상품을 구분

예) 0308호에 갑각류 및 연체동물물을 제외한 수생무척추동물에 대한 품목 신설, 제 9류 일부 향신료 상품에 "분쇄한 것"과 "분쇄하지 않은 것"의 소호 구분

□ 신기술 및 신상품 등장 등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

신기술의 발전과 신상품 무역의 수요로 인해 일부 류의 주, 소호의 주, 호와 소호에 대해 상응하는 수정과 추가를 하였다.

예) 면역제품(免疫制品)에 대한 정의 수정, 3002호와 관련된 류의 주를 수정, 바이오디젤을 3826호로 신설, 제 27류, 제 38류에 관련 류의 주를 신설하거나 개정

□ 무역량 및 품목분류 분쟁 우려 등을 반영한 세분화

무역편리화의 수요에 맞추어 무역량이 크고 품목분류 논란이 있는 신상품의 소호를 증가하였다. 중국이 제기한 의견에 따라 "탐승교"를 8479.71호와 8479.79호에 새롭게 신설하였고, "백합"을 0603.15호에 신설하였다. 재질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어 쉽게 분쟁이 발생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위생수건과 생리대, 유아용 기저귀, 기저귀 안감 및 유사한

위생용품을 9619호로 통합하고, 관련 류의 주를 새롭게 보완하였다. 미국의 의견에 따라 크렌베리와 크렌베리주스를 2008.90호와 2009.80호에 구분하였고, 콜롬비아의 의견에 따라 1701.13호에 사탕수수당(원심분리법을 거치지 않고 얻어진 사탕수수당 중에서 건조 상태에서 증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인 것만을 포함)을 신설하고 제 17류 소호의 주를 수정하였다.

□ 환경보호 관련 물품에 대한 조정

국제사회의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보호 문제와 관련된 상품의 목록 구조에 조정을 가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몬트리얼의정서》등 공약, 오존층 파괴물질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2903.71호에서 2903.75호까지 소호를 신설하였고, 《로테르담공약》중 새롭게 증가된 화학물질 리스트에 근거하여 HS 제도에 추가개정을 진행하여 위험 화학품 및 살충제의 소호를 증설하였다.

예)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 및 그 염"은 2908.92호로 신설, 2931호에서 "테트라메틸납 및 테트라에틸납"은 2931.10호로, 트리부틸린 화합물은 2931.20호로 각각 분리

□ **마약류 제조원료 등에 대한 통제**

마약류 제조 화학품의 무역을 통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요한 “마약류 제조가 가능한 화학품”에 대한 소호를 새롭게 부여하였다. 예) “놀에페드린과 그 염”은 단독으로 2939.44 호에 분류

□ **교역량이 낮은 물품에 대한 통합 및 삭제**

무역계와 HS 제도 이용자가 제기한 HS 제도 간소화 요구에 따라 국제무역 총량이 비교적 낮은 물품의 호(연간 무역량 1 억 달러 미만)와 소호(연간 무역 총량 5000 만 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통합 또는 삭제조치를 하였다.

관세청
부산국제우편세관
세관장 임 창 환
chron21@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제도 폐지 입안예고, 주세법 시행

□ 『관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2. 개정내용

△ 「관세법」 관련 질의회신 절차·방법 등 신설

「관세법」 해석관련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우선 질의하되, 그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거나 국제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질의인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는 등 질의회신 절차·방법을 명확히 함.

△ 사전통지제도 도입

관세 월별납부 승인, 특허보세구역 특허 등 허가·등록 등의 유효기간 갱신 시 사전통지

△ 가산세 면제 범위 조정

-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 세액 부족 시, 10% 가산세는 면제하되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세는 징수하도록 하여 성실신고 유도.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 시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부족세액은 징수하되 가산세는 면제함으로써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 면제

최근 2 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 억원 이하이고 최근 4 년간 수출입관련 법령 위반으로 통고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등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정기 관세조사 면제

△ 관세감면

관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다음 각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① 법 제 39 조제 2 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 일 이내

②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 일 이내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3. 시행시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영 시행 후 최초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 단, 사전통지제도 도입은 이 영의 시행일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 면제 범위 조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제도폐지』 입안예고

1. 개정사유

현재 품목분류 민원회신 제도는 (수출입 실적이 없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출입 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로 운영중이나, 따로 운영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원화 시킴

2. 개정내용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수출입신고한 물품의 경우에도 향후 수출입자가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해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할 수 있음.

-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제도" 폐지
- 이미 발급된 "품목번호 확인서"에 대한 효력 일괄 폐지(2012.12.31. 까지만 발급 효력 인정)

3. 시행시기

이 세칙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



□ 『주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이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2. 개정내용

- 주류수입업 면허요건 중 주류수입업만을 전업 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하여 주류수입업자가 주류 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 개선

-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과세표준을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 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100 분의 80 을 곱한 금액으로 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선 경
sklee@customsservice.co.kr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 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생산지원비의 특정 배분방법 인정여부

(HQ H031244 '93.6.30)

Assist(생산지원비용)이란 관세법 제 30 조 1 항 3 호 규정의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①수입물품 생산에 사용 되는 재료 및 부분품, ②공구, 금형, 다이스 등 ③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④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디자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생산지원비용은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과세되므로 어떠한 비용이 생산지원비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상황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하며(Reasonable manner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②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고(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ounting principles (GAAP))결정한 바 있음.

다) HRL542519(1981.7.21)

세관은 생산지원 비용을 첫 면세 신고 건에 배분되거나, 관세 환급 대상으로 하는 신고 건에 배분함으로써, 생산지원 비용의 일부를 비교세 대상으로 허용되는 제안 방식은 허용될 수 없음을 결정한 바 있음.

3. 사안검토

이 사안에서 툴, 다이스, 몰드가 생산 지원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I 의 배분 방법은 SAA 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방법도 아니므로, 수입물품과 연관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님(not Reasonable manner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생산지원 물품의 내용연수(Class Life)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 제조에 요구되는 기간보다 길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이는 생산지원비용의 많은 부분이 수입물품에 배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과세를 피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I 의 IRS 스케줄은 비 합리적이고, 적절하지 않으며 그 방식이 GAAP 에 부합한다는 사실자체는 중요치 않음.

따라서 과세되지 않는 생산지원 비용이 남게 되므로 IRS 의 ADS 방법을 허용 할 수 없음.

□ 결정(Holding)

평가의 목적상 I 의 배분방법은 생산지원 비용 금액의 일부에만 적용되므로 관세평가 목적상 허용 될 수 없음.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 거래사실(Facts)

1. 장난감을 수입하는 미국의 수입자(I)는 외국의 생산자(수출자(E))에게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툴, 다이스, 몰드 등을 공급함. 동 생산 지원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장난감 생산에 전적으로 사용됨.
 2. I 는 본 사안의 배분 방법도 미국 국세청(IRS)의 대체상각법 (Alternative Depreciation System)에 의해 기간에 따라 감가 상각하여 과세하고 있음.
 2. 대체상각법은 주로 해외에 있는 미국 유형 자산의 과세연도에 적용되고 수입물품의 내용연수(Class life)는 3 1/2 년 임.
 3. 감가상각 배분 시 반년관행(“half-year convention”)이 사용됨.
- “half-year convention”이란 반년 동안의 감가상각 제품들이 그 해 어느 시점에서 첫 서비스 되었는지 관계없이 상품이 서비스되어 지는 첫 과세년 동안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서비스가 과세연도 말에 이루어 졌을 때 한 해 동안의 전체를 감가상각 되는 것을 방지해 줌.
4. 내용연수와 half-year convention 및 감가상각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에 의하여 사용되어졌으며 아래와 같이 상각 됨.
 5. 국세청은 다음 내역의 감가상각 방법을 사용함.

| | |
|---------|--------|
| year #1 | 14.29% |
| year #2 | 28.57% |
| year #3 | 28.57% |
| year #4 | 28.57% |
| | 100% |

6. I 는 생산지원에 대하여 위의 감가상각법을 적용하도록 요청한바 있으나 세관은 이 방법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거부한 바 있음.

7. I 의 수입물품을 검토해본 결과 최근 5 년 간 244 개의 장난감의 수명이 약 70%의 제품이 평균 1 년이 지나면 생산수명이 끝나므로 85%의 생산지원비용이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쟁점(Issue)

IRS 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생산지원 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적용가능 한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근거

거래가격은 미관세법(19 U.S.C.) §1401a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률상 열거된 5 가지 항목을 가산한 금액이고, 생산지원비는 이 항목 중 하나임.

2. 관련지침 및 예규

가) SAA(Statement Administration Action)

생산지원 비용을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배분함에 있어 수입물품과 명백히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 ①첫 번째 수입물품 전체에 배분하는 방법, ②첫 번째 선적시점까지 생산된 양에 대해 배분하는 방법 ③수입될 전체의 양에 대해 배분하는 방법 을 제시함.

나) HRL544194(1998.5.23)

생산지원 비용의 배분 방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Getting Smarter



장승희 대표 관세사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 및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 다국적 기업은 새로운 비전을 "Let's Build a Smarter Planet"(보다 더 똑똑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라고 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최근 몇 년간 세계적인 화두는 단연코 'Smart'입니다. Smart 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의 본성은 Smart 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도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한 연구에서는 Technology 에 의해 인간의 두뇌가 Smarter 해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Technology 의 발달에 따른 도구의 사용이 인간의 두뇌를 Smarter 하게 만들어 준다면 현재의 Smart Phone, Smart TV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현대인의 "두뇌 Smart 지수"는 거의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Smarter 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수많은 도구를 활용하는 인간들은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까지도 Smarter 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또한 Smarter 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경영이론과 기술을 도입하며 Smarter 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적인 일환으로 새로운 제도를 앞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관세무역 분야에서도 최근 몇 년 간 새로운 제도들이 신설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등이 있습니다. 신한관세법인의 소식지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도 끊임없이 이 제도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업의 발전을,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Smarter 한 분들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활용을 하실 때 비로소 기업이 Smarter 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신한관세법인에서는 고객사의 CEO 및 임원분들을 위하여 관세무역분야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Be a Smarter Company!' 2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중소기업의 AEO 및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김영훈 관세사 (mhcha@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모델

FTA News-

이제는 '한-터키 FTA'를 바라본다!



최지아 관세사 (dk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 FTA 통관실무 및 비즈니스모델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기획연재시리즈@



임창환 경영학박사, 관세사 (chron21@customs.go.kr)

PROFILE

- 現)부산국제우편세관장
- 現)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 초빙학자 파견
- 前)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이선경 관세사 (jsk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US Rulings 연재@

생산지원비의 특정 배분방법 인정여부



신성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